

# 법으로 보호받는 나의 권리입니다.

## 권익보호 정신건강복지법 제69조



교육, 고용, 시설이용 등  
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



나의 동의 없이는  
녹음·녹화·촬영 금지



치료 또는 재활 목적이 아닌  
노동 강요 금지

## 특수치료 제한 정신건강복지법 제73조



내가 동의해야만  
특수 치료 가능

##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정신건강복지법 제74조



치료목적으로 의사의  
지시에 따라 최소한의  
범위에서만 제한

## 신체활동의 자유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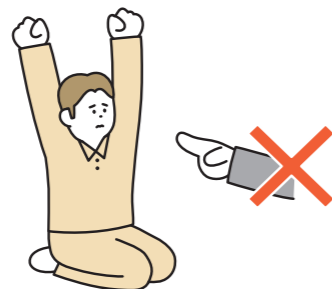


나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 
다치게 할 위험이 있을 때만  
의사의 지시에 따라 격리·강박

##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 정신건강복지법 제72조



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 
장소에만 수용 가능



폭행 또는  
가혹행위 금지

## 기록 열람 의료법 제21조



병원기록을 보거나  
복사본 요청 가능

나는 병원에서 나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 
년 월 일 시 분 에 받았습니다.

# 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

이름: \_\_\_\_\_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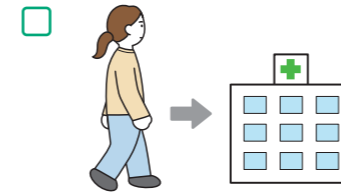
성별/나이: \_\_\_\_\_

이 서식은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 지켜져야 할 권리를 쉽게 알려주는 안내서입니다. 나의 입원 유형, 퇴원 방법, 권리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

나는 \_\_\_\_\_ 병원에 \_\_\_\_\_ 자의 / 동의 / 보호 / 행정 / 응급 \_\_\_\_\_ 입원 하였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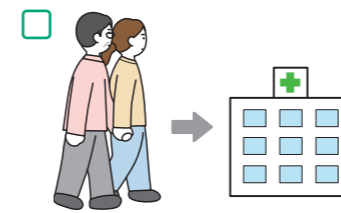
## 입원

## 퇴원



**자의입원**  
내가 입원을 결정합니다.

• 내가 호전되어 퇴원을 하고 싶으면  
퇴원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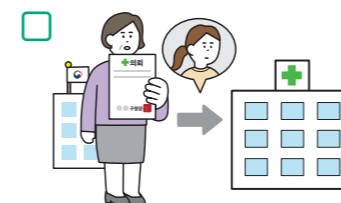
**동의입원**  
나와 보호의무자 1명이  
입원을 결정합니다.

• 내가 호전되어 퇴원을 하고 싶으면  
퇴원할 수 있습니다.  
• 다만 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면  
퇴원 요청 후 72시간 내 보호입원 또는  
행정입원으로 바뀌 더 입원할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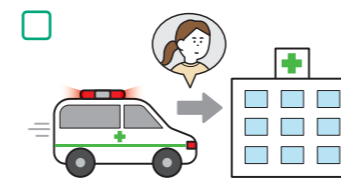
**보호입원**  
보호의무자 2명이  
입원을 신청합니다.

• 내가 퇴원을 원하더라도  
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면  
퇴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

**행정입원**  
시장·도지사·군수·구청장이  
요청한 입원입니다.

• 내가 퇴원을 원하더라도  
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면  
퇴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

**응급입원**  
나의 위험을 발견한  
누군가가 신청하여  
경찰과 의사가 동의하면  
입원이 됩니다.

• 3일 동안 입원합니다.  
• 입원치료가 필요하면  
다른 입원유형으로 바뀌  
더 입원할 수 있습니다.

자의입원과 동의입원이라면 확인해 주세요.

- 1 내가 어떤 유형의 입원을 했는지 잘 알고 있나요?
- 2 스스로 입원을 결정했나요?



나는 1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, 2정신건강심사위원회, 3법원, 4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보호입원, 행정입원 해당

### 1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

모든 보호입원과 행정입원에 대해 입원이 필요했는지, 입원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심사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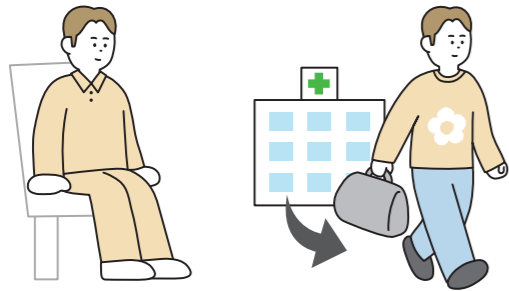
- 보호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했다면 1개월 안에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습니다.
- 조사원과의 면담(대면조사)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-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나의 입원이 필요했는지, 입원 과정에서 권리가 잘 지켜졌는지 살펴봅니다.
- 입원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.

입원 유지

퇴원



- 심사에 따라 입원 유지 또는 퇴원이 결정됩니다.
- 퇴원 결정을 받으면 바로 퇴원할 수 있습니다.

공정한 심사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의사, 변호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회복당사자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

모든 입원유형 해당

### 2 정신건강심사위원회

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-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퇴원을 원하는 경우
- 치료환경을 더 좋게 바꾸고 싶은 경우(처우개선)

\* 자의입원과 동의입원 중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
-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아래 내용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.

-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
- 3개월 안에 재심사
- 외래치료 지원
- 입원 유형 변경(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)
- 처우개선
- 다른 병원으로 이동
- 입원 유지



-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면 14일안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그 외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

보호입원, 행정입원 해당

퇴원을 원하는 경우

### 3 법원의 인신보호 구제 신청

더 궁금하다면?

통합콜센터 ☎1661-9797

모든 입원유형 해당

인권침해 또는 차별 피해를 당한 경우

### 4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신청

더 궁금하다면?

인권상담조정센터 ☎1331 또는 '인권e' 검색

-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필기도구는 병원에서 제공합니다.
- 작성이 완료된 서류는 병원에서 해당 기관으로 보내드립니다.

